

제주지방법원 2020. 6. 24 선고 2019나12053 판결 [계약금 등 반환청구]

---

### 재판경과

제주지방법원 2020. 6. 24 선고 2019나12053 판결

제주지방법원 2019. 4. 15 선고 2018가단7176 판결

### 전 문

**원고,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A**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민

**피고,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주식회사 B**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균

**변론 종결**2020. 5. 13.

**판결 선고**2020. 6. 24.

**제1심판결**제주지방법원 2019. 4. 15. 선고 2018가단7176 판결

### 주 문

1.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,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58,944,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7. 5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# 3. 부대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6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7. 5.부터 2019. 4. 15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문종철

판사류호중

판사조병대